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목차

1. 입주자 모집 단지	2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3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5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8
5. 신청서류	10
6.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안내	13
7.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14
8. 유의사항	18
9. 임대센터 위치안내	25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2]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붙임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붙임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붙임5] 위임장	
[붙임6] 각서	
[붙임7] 경기행복주택 공급 신청서(현장신청용)	
[붙임8] 경기행복주택 현장계약 확인서(현장계약용)	
[붙임9]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붙임10]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붙임11] 아동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 퇴소확인서 제출 각서	
[붙임12]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붙임13]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붙임14] 각서 [대학생용(행복주택 복학예정 확인서)]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11. 20.]

1. 입주자 모집 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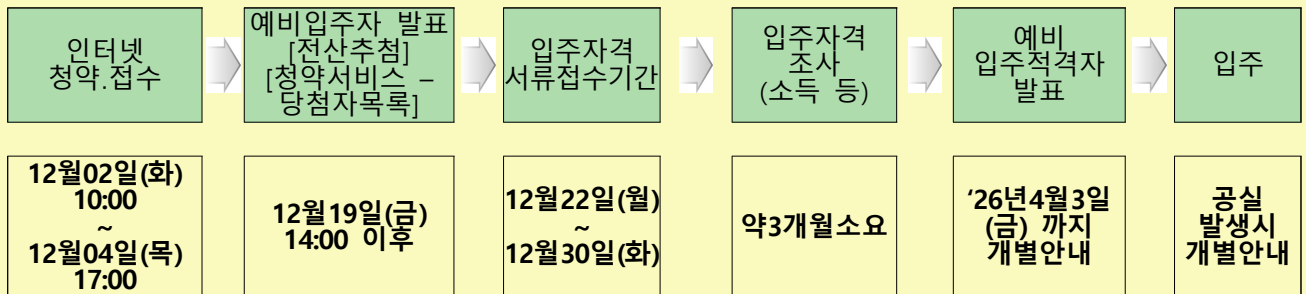
-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경기 평택시 고덕갈평3로 40)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분에게 공급됩니다.
- 공급대상자에 따라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본문의 세부 임대조건, 자격, 청약절차 및 기타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H에서는 콜센터 등을 통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 당첨자 발표 후 입주자격검증을 거쳐 적격자인 경우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효합니다.**

구분		입주자격(요약안내)
예비입주자	청년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청년(자립준비청년)	- 청년(일반공급) 요건을 모두 갖춘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 - 청년(일반공급) 요건을 모두 갖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은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서, 계약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진행합니다.

※ 입주자 선정 판단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11.20.)』입니다.

■ 유의사항

- 우선공급대상자 중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예정)자는 여성가족부의 요청(기관추천 별도 신청 필요)에 의하며, 접수기간에 본인이 청약접수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모집대상 주택은 입주자격 조사완료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적격자 안내일로부터 지정된 입주기간 내 입주가 가능합니다.(별도 안내가 없는 경우 안내일로부터 1개월이내)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 의거 임차권의 양도, 전대, 알선행위 등 임대주택법에 위법한 행위는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 발표 전 자립준비청년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탈락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은 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gh.or.kr>)으로 받습니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 및 미성년자 중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의 경우 현장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현장 접수 : [9. 위치 안내] 참조]
- 금회 임대대상은 타 임차인이 이미 거주 및 퇴거한 주택이 포함되므로, 생활 흔적 및 사용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주택의 경우 동일한 전용면적(소수점 제외)은 하나의 청약구분으로 구분 없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향후 계약해지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단지명	공급형		공급대상	모집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최대거주기간(년)	난방방식	건물층수	총세대수	입주
	주택구분	청약구분		예비자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기타공용	주차장						
평택고덕	18	18A1	청년 (자립준비청년 포함)	1	20	18.570	9.086	2.632	9.158	39.446	10년	지역난방	20층	800세대	별도안내
	26	26A1	청년 (자립준비청년 포함)	5	72	26.730	13.078	3.789	13.182	56.779	10년				
		26B	청년	-	4	26.730	13.078	3.789	13.182	56.779	10년				
	36	36A3	청년	-	3	36.920	18.064	5.233	18.207	78.424	10년				
		36B3	청년	-	3	36.910	18.059	5.232	18.202	78.403	10년				
	44	44A1	청년	-	21	44.810	21.924	6.352	22.098	95.184	10년				

※ 청약시스템의 공급형 표시, 계약서의 공급형 표시, 위 공급형의 청약구분 표시는 청약과 계약 관리를 하기 위한 단순 구분표시이므로 공급형의 주택구분을 기준으로 계약대상 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단지명	공급형		공급대상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청약 구분			합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증감 구분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평택 고덕	18A1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소득 없음	18,892	1,000	17,892	85,010	(+)	25,892	44,180
			소득 있음	20,003	1,000	19,003	90,010	(-)	9,892	111,260
								(+)	27,003	49,180
			(-)	10,003	119,170					
	26A1	청년 (자립준비 청년 포함)	소득 없음	26,764	1,000	25,764	120,430	(+)	36,764	62,100
			소득 있음	28,338	1,000	27,338	127,520	(-)	13,764	158,340
								(+)	38,338	69,190
			(-)	14,338	168,350					
	26B	청년	소득 없음	26,764	1,000	25,764	120,430	(+)	36,764	62,100
			소득 있음	28,338	1,000	27,338	127,520	(-)	13,764	158,340
								(+)	38,338	69,190
			(-)	14,338	168,350					
	36A3	청년	소득 없음	36,210	1,000	35,210	162,940	(+)	49,210	87,110
			소득 있음	38,340	1,000	37,340	172,530	(-)	18,210	215,440
								(+)	52,340	90,870
			(-)	19,340	227,940					
	36B3	청년	소득 없음	36,210	1,000	35,210	162,940	(+)	49,210	87,110
			소득 있음	38,340	1,000	37,340	172,530	(-)	18,210	215,440
								(+)	52,340	90,870
			(-)	19,340	227,940					
	44A1	청년	소득 없음	42,900	1,000	41,900	193,040	(+)	58,900	99,710
			소득 있음	45,424	1,000	44,424	204,400	(-)	21,900	254,290
								(+)	62,424	105,240
			(-)	23,424	268,560					

- 청약신청은 공급형(청약구분)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전용면적(소수점 이하 절사) 내의 주택구분 범위에서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주택(청약구분)의 예비당첨자에게 시설 변경 없이 최초 공급형 및 공급계층의 시설 상태로 우선 공급합니다.
이때 동·호 배정은 전산추첨으로 진행하며, 3층 이하 주거약자용 주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최초 공급형에서 계층 전환된 주택이 포함되어 있어 세대내 설치되는 시설(옵션 포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당초 시설의 변경없이 공급됩니다.
- 계약해지, 예비당첨자 계약포기 등으로 남은 주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주택은 금회 모집 대상자(예비자)에 포함하여 공급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한 행복주택의 예비자가 금회 모집한 행복주택을 계약하거나 예비당첨자가 되는 경우, 기존 계약(자격, 권리) 또는 예비당첨자 자격은 해지(소멸)되며 계약자인 경우에는 계약시 정한 위약금도 부과됩니다.
- 임대조건은 주거전용면적(소수이하 절사)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거전용면적 외 주거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면적 등의 변경으로 임대조건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 전기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 재계약(갱신)자 또는 계층변경자는 임대차계약(재계약)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하여 변경된 임대조건(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1년간 동일한 임대조건 적용)과 조사된 입주자격(입주계층, 소득유무에 따른 할인 또는 할증 대상 여부)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입주시점 등 별도 지정기간(별도안내)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횟수는 제한될 수 있음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연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기간(소명기간)에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계약자는 계약해지)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동호배정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며 특정 동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 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체도 불가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공급단지별, 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도로, 유흥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은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거주 중인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할 경우 퇴거 1개월 전까지 해약 신청하셔야 하며, 주말 및 휴일 퇴거의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보증금이 지급됩니다.(해지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퇴거 시,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유보하며 1개월 이내 비용정산 후에 반환됩니다.
- 금회 임대대상은 타 임차인이 이미 거주 및 퇴거한 주택이 포함되므로, 생활 흔적 및 사용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 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미성년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인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의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적격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청년

■ 우선공급대상자(자립준비청년)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0.) 현재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 당첨자 발표 전 자립준비청년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탈락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우선공급대상자 중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예정)자는 여성가족부의 요청(기관추천 별도 신청 필요)에 의하여, 접수기간에 본인이 청약접수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 우선공급대상자는 일반공급대상자의 예비순위보다 우선 배정합니다.
- ※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원한 사람 중 자격검증 기간 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됩니다.
- ※ 우선공급에서 경쟁으로 인하여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부적격자는 제외)
- ※ 우선공급 대상이 아닌 자가 우선공급 신청 시 부적격자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자립준비청년 중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주거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입주일 순으로 지원)의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수기계약을 하며, 이에 따라 임대센터(또는 공급센터)가 위치한 현장에서 계약체결을 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2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㉓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㉓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①-㉓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①-㉓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는 가구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p	
			자녀 1명 있는 경우(+10%p)	자녀가 2명이상 있는 경우(+20%p)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세대기준)	1인	4,317,797원 이하	-	-
	2인	6,024,703원 이하	6,572,404원 이하	-
	3인	7,626,973원 이하	8,389,670원 이하	9,152,368원 이하
	4인	8,578,088원 이하	9,435,897원 이하	10,293,706원 이하
	5인	9,031,048원 이하	9,934,153원 이하	10,837,258원 이하
	6인	9,733,086원 이하	10,706,395원 이하	11,679,703원 이하
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본인 기준)		4,317,797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p가산)을 합산하여 산정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

- ④ 해당 세대(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아래 표의 기준 이하일 것

구분	출생 자녀 수	자산보유 기준금액	
		총 자산가액	자동차가액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1명	27,940만원 이하	5,020만원 이하
	2명 이상	30,480만원 이하	5,476만원 이하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2명 이상	30,480만원 이하	5,476만원 이하
그 밖의 경우	-	25,400만원 이하	4,563만원 이하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

-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우선공급대상자는 일반공급대상자의 예비순위보다 우선 배정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청년의 경우 소득 있음/없음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 청약신청시 '소득 없음'으로 신청했으나 자격검색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치며 소명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임대조건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함

※ ①-㉓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하며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 ※ '청년'의 해당세대란

구분(신청자 기준)	해당세대	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	신청자	-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1순위	해당주택 건설지역(평택시) 또는 연접지역(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 아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2순위	수도권[1순위 지역 제외]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3순위	거주지나 소득근거지가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등
인터넷 청약 접수	25.12.02.(화) 10:00 ~ 25.12.04.(목) 17:00	· 경기주택도시공사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현장에서 청약접수를 도와드립니다. (현장 접수처 : [9. 위치 안내] 참조) ※ 현장접수시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지참 ※ 청약접수기간 중 24시간 인터넷신청가능
예비입주자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5.12.19.(금) 14:00 이후	
자격 심사 서류접수 마감	25.12.22.(월) ~ 25.12.30.(화)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 제출처(등기우편) : [9. 위치 안내] 참조 ※ 마감일까지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시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안내없이 계약이 취소됩니다. ※ 서류 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이 불가하오니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우체국 콜센터(1588-1300)에서 배송조회(등기번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조사	약3개월 소요	· 무주택.소득.자산 등 모집공고의 입주자격을 조사
예비입주 적격자 발표	'26.04.03.(금)까지 개별안내	·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 (https://apply.gh.or.kr) ※ 신청시 작성된 휴대폰으로 개별안내(수신 동의자만 발송 가능)
입주안내	공실 발생 시 개별안내	

- 인터넷 청약은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서, 계약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현장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계약방식의 변경시는 청약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됩니다.
- 현장접수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 별도 게시합니다.
- 미성년자는 필요서류(계약안내 참조)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최종 적격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정확하고 신중하게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지정기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접수기간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청약센터(<https://apply.gh.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서류심사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지정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당첨이 취소되므로 청약센터를 통하여 당첨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 신청자 >

- * **청약방법 :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가능)

< 현장 신청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 등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방문(5.신청서류 일괄 제출 가능)
- * 접수장소 : [9. 위치 안내] 참조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신청자 >

-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 및 현장접수 모두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발송된 것을 유효한 접수로 인정합니다. **(특정일 및 특정시간에 신청자가 많아 현장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우편접수를 부탁드립니다.)**
(등기우편) [9. 위치 안내] 참조
(현장접수) [9. 위치 안내] 참조, 접수시간 10:00 ~ 17:00 점심시간 및 휴일 제외
- * 준비서류는 아래 '5.신청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정자로 서명(홍립서명 금지)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자 >

- * 접수 시 해당 서류를 현장에서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 청약 절차



○ 인터넷 청약 시 유의사항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기타사항

인터넷 청약접수는 접수시작일 오전10시부터 마감일 오후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 접속자 폭주 등에 의한 일시적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해서 접속자가 물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internet-explorer 버전 10이상에 최적화 되어 있어 버전이 낮은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높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크롬 등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 * 인터넷으로 청약하기 전 청약신청 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11.2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및 '청년'은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하거나 허위인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1]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청년'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세대원 이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작성,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 및 해당세대 모두작성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3]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거급여수급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붙임2]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붙임4]	대상자 : 예비자로 선정된 자 작성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각서 [붙임6]	작성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각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1통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상세증명서로 발급	'대학생', '청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신청인 본인기준 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1통
입양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1통
출생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출생 신고 전에 출생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선공급] 자립준비 청년 (아동복지 시설)	• (퇴소자) ①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②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보호종료 확인서(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수당 증명서(행정복지센터) 중 한가지 서류 • (퇴소 예정자) ①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 제출각서 ②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입주시까지) ③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보호종료 확인서, 자립수당 증명 서 중 한 가지 서류(입주시까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 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자작성
	[우선공급]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 지시설)	• (퇴소자) 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확인서(복지시설 이용기간 표시) ②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퇴소 예정자) 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확인서 제출각서 ②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확인서(입주시까지) ③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청소년복지시설 신청자작성
	청년 (주거약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 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 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행정복지센터 국가보훈부

		고업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중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원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사본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대 학 생	재학생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붙임13)(복학 후 1개월 이내 재학증명서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취업 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신 혼 부 부 계 층	신혼부부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붙임12) · 예정 세대구성 확인서(붙임13)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사본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	---	-------------------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6.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예비입주자(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5.12.19.(금) 14:00 이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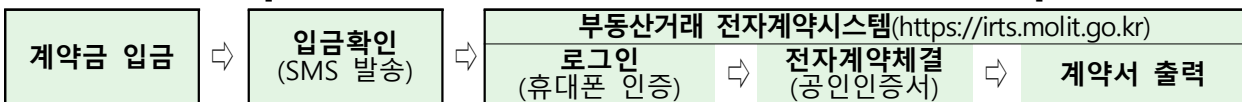
-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 → 청약서비스 → 당첨결과조회[당첨자목록] → “예비자 확인”

■ 예비입주 적격자 안내 [2026.04.03.(금)까지 개별안내]

- 신청시 작성된 휴대폰으로 개별안내 (수신 동의자만 발송 가능)

■ 계약안내

- 계약기간 : [기간 : 공실 발생 시 개별 안내]
- 계약금 입금계좌 : 개인별 보증금 가상계좌 - 경기주택도시공사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의 청약서비스/계약정보 조회에서 확인
- 계약방법 :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진행]



- * 지정기간내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체결 가능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
-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본인 인증이 불가하므로 현장계약을 하여야 함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청약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GH주택청약센터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변경(계약서비스-계약정보조회/변경-예비입주자조회-개인정보변경) 메뉴에서 변경 하여야 합니다.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의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장계약 시 필요서류>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입금 확인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에 법정 대리인 인감날인) ※ 동의서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는 '공통서류'와 신분증, 계약자와 관계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 • 위임장(공사양식에 계약자 인감날인) • 대리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 자필서명 방식으로 위임장 작성자는 계약자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G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
--

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 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반영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 보수액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행복e음(자활)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한국고용정보원(공공)

총 자산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 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 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 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 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 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 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 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 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 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 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 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 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 지방세정 자료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tr><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tr><td>청년, 대학생</td><td>10년</td></tr><tr><td>신혼부부·한부모가족</td><td>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td></tr><tr><td>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td><td>20년</td></tr></table> - 청년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 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 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 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 대학생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 대학생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년								
예비입주자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공급 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갱신계약 등

갱신계약자격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 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준거주자 중 해당 공급 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갱신계약시 자산·자동차가액 초과할 경우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거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임대주택 단지 주차등록 허용대상은 고가차량이 아닌 ①임차인 등의 소유차량 ②임차인 등의 전용차량(임차인 등이 전용하는 렌트·리스차량에 한정함)이며, 이외 차량은 주차등록 및 주차장 이용이 제한됩니다.

세대원 수에 상관없이 단지 내의 차량등록은 1세대 1차량을 원칙으로 하며, 단지 관리 규약 및 단지 여건에 따라 추가차량 등록 허용 여부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필히 각 단지 관리사무소로 차량등록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학생이 소유하거나 전용하는 차량은 고가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주차등록이 불가합니다.

* 고가차량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 입주자격 기준 자동차가액 초과 차량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공고일 기준 4,563만원(부가세 포함), 승용차 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자동차를 공유(지분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 전체를 산출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홈택스 차량가액은 부가세 미포함 금액으로 1.1을 곱한 금액이 차량가액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금액 중 낮은금액 인정됩니다.

신청자격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청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 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 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에치금의 납부, 이사집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 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르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 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단지별 유의사항

【 공통사항 】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부지 현장 및 주변여건 등을 사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 하여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하부에 상가, 부대복리시설 및 펌프실, 지하저수조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승강기는 기계실 없는 타입(MRL)으로 구조상 메인판넬이 최상층에 위치하는 관계로 기계 작동음 등의 소음이 상층 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에 통합단자함(전기+통신)이 현관 또는 거실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녹화되고 있습니다.
- 불박이 가구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측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측벽에 설치된 배선기구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및 에어컨 사용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세대 내부 곰팡이 발생 등은 입주민 책임입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등은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상가가 설치 . 운영되는 1층 일부에는 단지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합니다.
- 홍보관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특정지구의 예시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대상과 관계가 없으며 해당지구 역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투시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입주자격심사 종료 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세대로 인입되는 각종 배관들에 의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택고덕 】

■ 단지 유의사항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에는 발코니창, 벽,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축벽세대의 경우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축벽 및 설치 된 배선기구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옥외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함 바닥이 에폭시로 되어있어 우천시 또는 동절기에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 흡연장소 인접세대의 경우 담배냄새가 세대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하부에 상가, 주민공동시설 및 펌프실, 실외기실, 지하저수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 공유정원, 공유주차 등 행복주택 입주자 공동 사용 공간에 면하는 세대는 소음, 사생활 침해, 도난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 및 복도에 면한 창호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1F 세대만 방범용 방충망이 시공됩니다.)
- 창호 형태는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202동, 6203동 옥상 조형물 경관조명 불빛으로 인하여 야간에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야간의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방 방식은 지역난방이며, 세대 가스계량기, 급수계량기, 급탕계량기, 난방계량기,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입니다.
- 세대에 전기 및 통신단자함이 현관 신발장 내부 또는 현관/거실/주방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등의 상, 하부 및 뒷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거치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 제품과 겹치는 일부 타입은 상부장의 크기 또는 장 내부 깊이나 축소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거나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는 배관 유지보수로 인해 천장 석고 마감이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 세탁실에는 온도차에 의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및 세탁실 불빛이 보일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세대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차로 인하여 현관문에 결로가 발생하여 도어락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결로로 인한 도어락 고장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실내 온도를 적정온도로 유지하여 현관문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발코니는 설계상 문짝과 바닥사이에 틈이 발생하며,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복도에 새시가 설치되나 별도의 단열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대내 창호와 달리 완전히 밀폐된 창호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바람소리가 들리거나 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2개소에 차량출입 통제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문차량은 사전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및 등하원 차량 드랍오프 존은 부출입구에 위치함)

- 최고층수는 해당 타입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주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단지배치, 단위세대 등의 주거전용, 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시설 등은 개인의견(취향)에 따라 변경·수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주거동의 경우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의 방법을 위해 동출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경비실에 무인택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평택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며, 정원의 100분의70을 단지 내 거주하는 거주자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나머지는 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자를 결정합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송안테나, 피뢰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환경권과 조망권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6202동, 6203동 아파트 옥탑에는 증계기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된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공용홀(계단실) 창은 피난시 제연을 위하여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계단실 일부층에 개폐창호가 설치됩니다.(엘리베이터 홀 창은 화재 시 자동 폐쇄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562대(근생주차 9대 제외)이며, 일반주차 227대, 장애인 17대, 확장형 235대, 경형 54대, 전기자동차 29대(전기자동차 충전기 완속11대, 급속1대-주차대수 미포함)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1개층이고 각 동과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우선이며,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진입의 유효높이는 2.3m이하로 탑차 및 이삿짐 사다리 차량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춰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은 총 9대이며 지상주차장에 공동주택 주차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상주차장은 입주자 및 상가, 상가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당 1대 차량만 등록 가능(대학생 세대 거주가족차량만 등록)하며, 고가차량(3,803만원이상)등록 불가
- 아파트와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저층세대는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접근 방법 및 주차 대수 등은 각동, 호수별 상이할 수 있으며, 동별 주차 계획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아 만차시 다른 주거동 주변에 주차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오토바이 전용주차 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6203동은 현관입구 앞에 오토바이 전용구역이 설치되어 출입 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 전용주차 구역이 협소하여 오토바이 주차 시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여유 공간에 주차할 수 있으나, 차량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 불가합니다.
- 주동하부 및 지하1층, 최상층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일부세대에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창고 등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되었으며,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 발생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실 근접 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램프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일부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는 각 세대 실외기실로 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우천시 실외기실 루버를 열어놓으면 빗물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 하절기 실외기실 루버를 개방하지 않고 에어컨 가동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실외기실 루버를 닫지 않을 시 결로 및 스프링클러 동파 위험이 있습니다.
- 일부세대에서 세탁기 설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실외기문이 일부만 개방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동 지하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과대한 크기의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탁기 및 냉장고 설치 가능 사이즈는 평형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타입	세탁기		냉장고
	W(mm)	D(mm)	W(mm)
18	600 이하	800 이하	-
26	600 이하	800 이하	-
36	800 이하	850 이하	900 이하
44	8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 세탁실 및 냉장고장 사이즈에 설치 가능한 제품을 설치 바랍니다.
- 콘센트 위치의 간섭으로 설치 및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옆 세대로의 피난을 유도하는 비상탈출구(실외기실 내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미관 상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세대의 발코니 단차 및 세탁기 위치는 실시공시 위치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 및 침실 창에 설치되는 모든 방충망은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사고를 대비 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홀, 복도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공용사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각 동 1층 현관문 입구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필요시 누구나 사용가능 함)
- 전기, 급수설비 등 정기검사, 긴급보수, 점검 등으로 단전, 단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소방, 전기, 급수, 배수의 누수 등 세대 내 시설 점검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동절기 계량기(난방, 냉수, 온수) 동파방지를 위하여 수도꼭지를 열어 물을 한방울씩 떨어트리는 등으로 동파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복도 외벽 창문에 방충망이 없습니다.
- 노약자시설 등 설치된 시설물등은 철거되지 않습니다. 입주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 여건

- 사업지구 인근에 저류시설, 방수시설(빗물펌프장), 전기공급시설(변전소, 케이블헤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상수가압장 및 배수시설,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공동주택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로시설물 등 사업지구 내.외의 기반시설(도로, 도시가스 등)의 설치 및 주변 상황 등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동측으로 수도권지하철1호선이 지나가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측으로는 33미터(8차선 이상) 도로와 연결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공원조성(법면발생, 식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인근의 생활편의시설물 건립 일정은 미정이므로 입주 후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단지주변현장의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에 설치된 지역편의시설은 관할 구청 협의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중정 공간은 평소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하지만 비상시(화재 등)와 이사시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받은 차량에 한해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9. 임대센터 위치안내

**평택고덕 및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 임대센터**

경기도 평택시 고덕갈평3로 40,
관리동 2층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임대센터

평일 10:00~17:00,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상담전화 : 031)668-8707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2025. 11. 2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서명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서명
		본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라.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강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3.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계약자] 5년**

라. 정보주체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4.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u>국토교통부</u>	<u>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u>	성명, 연락처, 주소,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u>	<u>각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보유</u>
<u>소득·재산·주택·공공 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u>	<u>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u>	성명, 연락처, 주소,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u>	
<u>사회보장정보원</u>	<u>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u>	성명, 연락처, 주소,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u>	
<u>한국부동산원</u>	<u>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가입은행,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등)</u>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u>우정사업본부</u>	<u>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u>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u>여성가족부</u>	<u>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예정 포함)한 사람 중 주거지원 필요여부 확인</u>	성명, 연락처, 주소, <u>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u>	

나.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및 제공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합니다.

- 수집·이용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보유·이용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u>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u>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u>[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u>

- 제공 안내

제공받는 자	제공 근거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u>국토교통부</u>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4(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5(금융정보등의 제공, 6(자료요청), 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u>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u>	<u>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u>	<u>각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보유</u>
<u>소득·재산·주택·공공 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u>		<u>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u>		
<u>사회보장정보원</u>		<u>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u>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생년월)일		
	주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원	[임차인]	
		아니오 ☐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원	[수분양자]	
		아니오 ☐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원	[출자자]	
		아니오 ☐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원	[임대인]	
		아니오 ☐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		원	[차주]	
		아니오 ☐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년 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해당철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²⁾ (서명 또는 인)
본 인		 0 1 0 —		
		 0 1 0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유의사항

■ 제출 시 유의사항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에 스테이플러를 사용하지 않고, 자필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란과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다음과 같이 필히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 실을 동의자에게 통보 하지 아니함 ²⁾ (서명 또는 인)
본인	홍길동	8 0 0 1 0 1 - 1 2 3 4 5 6 7	홍길동	홍길동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자란에 신청자 본인 인적사항 및 서명을 빠트림 없이 기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0. 7.> [양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홍길동	4 5 1 0 1 0 - 1 1 1 2 2 2 2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화성구 화성동 0000, 00동 00호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 실을 동의자에게 통 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²⁾ (서명 또는 인)
본인	홍길동	4 5 1 0 1 0 - 1 1 1 2 2 2 2 0 1 0-9 8 7 6-5 4 3 2	홍길동	홍길동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확인자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또는 배우자)은 (신청 단지명) 경기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유형(행복주택) 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단, 기존 예비입주자의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적격자 발표일 순으로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됨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임 차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귀하

위 임 장 (신청용, 계약용)

※ “신청용, 계약용” 해당란에 ○표

위 임 인(본인, 위임하는 분)

성 명 : (인)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행복주택**(신청·계약)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아래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신청용, 계약용” 해당란에 ○표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수 임 인(대리인, 위임받는 분)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 부 :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위임인, 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각 서

계 약 대 상 : [신청 단지명] 경기행복주택 (동 호)

※ 예비자의 경우 동 호 생략

본인은 위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는 해약 및 자진퇴거는 물론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고 아래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전매 또는 전대(일부 전대포함. 이하 같다)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전매, 전대 등 불법 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시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사진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3. 본인이 입주 부적격자임을 정부나 해당기관이 귀 공사에 통보한 경우에 귀 공사의 계약해지 및 퇴거요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귀 공사가 정한 기간 내에 자진퇴거 하겠습니다.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경기행복주택 공급 신청서_(현장신청용)

1. 신 청 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2. 신청내용

지구	공급유형(타입)	공급대상(계층)	비고

위 신청인의 인터넷 청약(전산입력) 내용을 신청인의 자격(또는 신청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입력사항은 본인이 확인·입력한 내용 이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가 있어 탈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예비입주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서명)

※ 붙임 : 위임장(대리 신청자 해당) 1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경기행복주택 현장계약 확인서_(현장계약용)

1. 계 약 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2. 계약주택

지구	공급유형(타입)	공급대상(계층)	동 호

위 계약인은 현장에서 전자계약을 위한 서명을 완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 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대리인 포함) :

(서명)

※ 붙임 : 위임장(대리 신청자 해당) 1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대상 아동	성명	생년월일
	퇴소 연월일	

대상 시설	시설명	인가번호
	주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

퇴소 사유	
-------	--

상기 대상자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원 장 직인

추가서류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퇴소자	성명	생년월일
	퇴소 연월일	
	시설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대상 시설	시설명	인가번호
	주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

퇴소 사유	
-------	--

상기 대상자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원 장

직인

추가서류 :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아동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 퇴소확인서 제출 각서

모집공고			
복지시설 종류	☐ 아동복지시설 / ☐ 청소년복지시설		
신청주소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퇴소 예정일	20	년	월 일

본인은 현재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예정자로서 경기행복주택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자격으로 신청하였으며, 관련 법령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 주택의 입주 시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입주할 것을 확인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입주 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아동복지시설명 :

생년월일 :

신청인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경기행복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1) (대표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상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신청인(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공동신청	☐	상기 신청인 (1), (2)는 _____ 행복주택에 공동으로 신청함
개인정보	☐	상기 신청인 (1), (2)는 _____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관계	☐	상기 신청인 (1), (2)는 _____ 행복주택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인1(대표신청인) :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경기행복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지정기간만료일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과의 관 계	성 명	주민번호	신청자가 속한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분
본인		-		동일세대 ☐ 분리세대 ☐
배우자		-		
		-		
		-		
		-		

년 월 일

신청인1(대표신청인) : (인)
신청인2(예비배우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각 서 [대학생용(행복주택 복학예정 확인서)]

(복학예정자의 복학 및 복학증명서류 제출 필요)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대 학 명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현재 휴학 중이나 다음 학기(20 년 월) 복학예정자로서 행복주택 공급대상 중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학기까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각서인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